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상충된 별표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적용범위 개정(안 제2조)
 - 현행 : 이 조례는 법·령·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적용한다.
 - 개정 : 이 조례는 법·령·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단서 규정 신설)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중 법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참고자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치 제28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2003.7.28개정)
- 입법예고(2003.11.27~12.26)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서 동 근)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상충된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다만,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고자 함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상충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